

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(제18조제1항 관련)

가.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

구분	일시 청소년 쉼터	단기 청소년쉼터				중장기 청소년 쉼터	청소년 자립 지원관	청소년 회복지 원시설
		10명 미만	10~15 명 미만	15~20 명 미만	20~25 명 미만			
시설장	1	1	1	1	1	1	1	1
보호· 상담원	4	2	3	5	6	2	—	1
자립지 원요원	—	—	—	—	—	—	1	—
행정원	—	—	—	1	1	—	—	—
조리원	—	—	—	1	1	—	—	—
행정원 또는 조리원	1	1	1	—	—	1	1	—
합 계	6	4	5	8	9	4	3	2

비고

1.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하며,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가. 시설장이 공무원인 경우(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)
 - 나. 업무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우
2.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과 보호·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.
3.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행정원 또는 조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

나. 청소년치료재활센터

구분	20명 미만	20~30명 미만	30~40명 미만	40~50명 미만	50~60명 미만	60명 이상
시설장	1	1	1	1	1	1
관리업무 책임자	—	—	—	1	1	1

상담원	4	5	6	7	8	9
보호·자립 지원 요원	7	11	15	19	23	27
의사	1	1	1	2	2	2
간호사	1	1	1	1	2	2
치료사	1	1	1	2	2	2
임상심리사	1	1	1	1	1	1
행정업무 수행 직원	2	2	3	3	4	4
전산원	—	—	—	1	1	1
영양사	—	—	—	—	1	1
조리원	1	1	1	1	1	1
시설관리원	1	1	1	1	2	2
운전원	1	1	1	1	2	2